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1218번

○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○ 제 출 일 : 2016년 5월 30일

○ 회 부 일 : 2000년 5년 31일

2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」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,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
나.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 : 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

○ 소 재 지 :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

○ 시설규모 : 668㎡(3층/지하1층)

○ 이용대상 : 각급 학교 학생, 시설 청소년, 학부모, 지도자 등

○ 주요사업 :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, 성교육 체험관 운영,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

나. 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(2016. 9.29.~2019. 9.28.)

○ 위탁업무

-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- 발달단계별 성문화교육관 설치·운영
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- 기타 청소년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,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등

○ 소요예산 : 665,548천원(국비 75,370천원, 시비 590,178천원)

○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
-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

○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〈개정2014. 5.14.〉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14.5.14.〉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

2.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· 운영하는 단체

3.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

4.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예산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 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성교육과 성상담 및 학부모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'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'(영등포구 소재)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.

< 시립 아하!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개요 >

- 시 설 명 : 시립아하!성문화센터(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)
- 시설규모 : 668㎡(3층/지하1층)
- 위탁기간 : 3년(2016.9.29.~2019.9.28.)
- 이용대상 : 각급학교 학생, 시설 청소년, 학부모, 지도자 등
- 주요사업 :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, 성문화 체험관 운영,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
- 소요예산 : 665,548천원(국비 75,370천원, 시비 590,178천원)

※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제2항가 개정(2016.1.7.)에 따라 본 센터의 민간위탁이 8회차에 달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을 시행하며, 발달 단계별 성문화교육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, 출장 성교육, 거리 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 등 기타 청소년 성교육관련 자료 연구 및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현재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본 센터를 포함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음.

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(2016.4. 기준)

연번	시설별	면적(㎡)	소 재 지	직원현황(명)	`16년 예산현황(원)	최초위탁일 위탁기간	운영단체
1	아하! 청소년 성문화센터	668	영등포구	17	665,548 (국비 75,450)	`06. 7. 1 `14.7.1~`16.6.30	(재)한국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
2	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	198	광진구	5	150,740 (국비 75,370)	`10. 7. 1 `15.7.1~`18.6.30	(사)흥사단
3	창동청소년 성문화센터	181	도봉구	5	150,740 (국비 75,370)	`06. 4. 20 `13.7.1~`16.6.30	광운대학교
4	청소년드림 성문화센터	300	강남구	5	150,740 (국비 75,370)	`12. 7. 1 `15.7.1~`17.6.30	(재)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
5	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	158	중랑구	5	150,740 (국비 75,370)	‘14. 12. 10 ‘14.12.10~‘17.11.30	(사)탁틴내일
6	동작청소년 성문화센터	340	동작구	5	147,740 (국비 73,870)	‘15. 11. 18 ‘15.11.18~‘18.10.31	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인 ‘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’는 1999년 영동포구에 설치되어 성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각각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연결하여 성문화 실태조사, 포럼개최,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성문화센터 간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그동안 서울YMCA, 한국YMCA에서 수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음.

< 시립아하!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내역 >

구 분	협약기간	위탁단체
신규위탁(1차)	1999.12. 1.~2000.12.31.	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
재 위 탁(2차)	2001. 1. 1.~2003.12.31.	서울YMCA
재 계 약(3차)	2004. 1. 1.~2006. 6.30.	서울YMCA
재 위 탁(4차)	2006. 7. 1.~2009. 6.30.	한국YMCA
재 계 약(5차)	2009. 7. 1.~2011. 6.30.	한국YMCA
재 위 탁(6차)	2011. 7. 1.~2014. 6.30.	한국YMCA
재 계 약(7차)	2014. 7. 1.~2016. 6.30.	한국YMCA
금 회 (8차)	2016. 7. 1.~2019. 6.30.	

< 시립아하!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법인 현황 >

구분	한국YMCA	서울YMCA
설립 일자	1955.11.11.	1924.10.13.
대 표 자	허정도	조기홍
법인소재지	중구 남대문로5길 39	종로구 종로 69(종로2가)
주요 사업	청소년문화사업, 출판사업, 환경사업, 복지사업 등	사회복지, 청소년지도육성, 사회교육, 평생교육시설운영 등

○ 최근 무분별한 성정보·성범죄·성관념·성문화 그리고 청소년 사이의 성문제의 증가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고,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,

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토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센터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,

성상담은 많은 실무와 교육을 통해 훈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청소년 성문제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.

※ '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'는 2015년 '성상담 사례연구' 등 14개의 프로그램으로 실무자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과정을 운영하였으며, '성장놀이터', '사춘기파티' 등 성문화만들기 프로그램 운영과 전화·심리·집단 상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.

최근 3년간 성문화센터 교육현황(2013~2015)

년도	구분	시립					구립	민간	
	시설 / 계	아하	창동	광진	드림 (2013~)	중랑 (2015. 4~)	송파	탁틴	하름이
2013	274,705	67,615	26,989	13,500	6,017		52,064	82,042	26,478
2014	266,016	75,099	40,508	15,598	22,749		62,029	36,445	13,588
2015	241,110	91,284	25,065	17,001	11,399	7,754	36,429	44,020	8,158

○ 위탁비용은 인건비(70.3%), 운영비(9.8%), 사업비(19.8%) 등으로 6억6천5백만원(국비 75,370천원, 시비 590,178천원) 규모로 구성되며, 3년간(2016.9.29. ~2019.9.28.) 위탁할 예정에 있고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음.

시립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산출 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	산 출 금 액		비 고
보조금 계			665,548	
인건비			468,212	
	인력력운영(전담)			
	시설장	49,312천원 x 1명 =	49,312	
	부 장	43,440천원 x 1명 =	43,440	
	팀 장	27,759천원 x 4명 =	111,036	
	팀 원	22,793천원 x 8명 =	182,344	
	인력력운영(계약)			
	상담·사무보조	19,080천원 x 3명=	57,240	
	운전기사	24,840천원 X 1명=	24,840	
운영비			65,264	
	사무관리비 (토너,용지 구입 등)	1,294천원×12개월 =	15,800	
	운영 관리비 (공공운영비, 시설비 등)	3,062천원 × 12개월 =	36,744	
	운영비(여비,회의비 등)	1,060천원 × 12개월 =	12,720	
사업비			132,072	
	교육, 상담지도사업 등		3,440	
	찾아가는 이동버스 운영		128,632	

※ 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50:50으로 편성되나, 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시비규모가 더 큰 것이 특징임.

- 총예산 6억6천5백만원으로 시비 5억9천만원, 국비 7천5백만원 규모임.

아하!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시비규모가 큰 사유는

- 1999년 서울시의 특화시설(시비 100%)로 설치되었고,
- 교육사업·문화교류·상담사업·업무지원 4팀으로 구성(총 18명, 정규직 13명, 추가인력 5명)
- 2016년 기준으로 9개 사업,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함.
- 사무실과 교육관으로 이루어진 타 청소년문화센터(5명으로 구성) 예산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음.

○ 산출기초 중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의 국비·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책정되어 청소년수련관 인건비에 비해 성문화센터의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,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성문화센터 이직률이 평균 30%에 달하여 양질의 전문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달리 지속적인 인력 교체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
○ 성문화센터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적은 인건비로 볼 수 있는 바, 이는 청소년수련관은 '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지침'에 따라 호봉제로 인건비가 산정되고, 성문화센터는 '여성가족부 지침'에 따라 총 운영비 내에서 연봉제로 인건비가 산정·지급되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있음에 따른 것임. 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는 여성가족부에 성문화센터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

최근 3년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고용형식 및 이직률 (단위: 명)

연번	시설명	연도별	정원 (A)	현원 (B+C+D)	정규직 (B)	계약직 (C)	시간제 (D)	이직인원 (E)	이직율 [E/A×100]
1	아하청소년 성문화센터	2013	17	17	9	8	0	4	23%
		2014	17	17	13	4	0	3	17%
		2015	**17**	**18**	**14**	**4**	**0**	**5**	**29%**
2	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	2013	5	5	5	0	0	0	0%
		2014	5	5	5	0	0	3	60%
		2015	**5**	**5**	**5**	**0**	**0**	**2**	**40%**
3	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	2013	-	-	-	-	-	-	-
		2014	-	-	-	-	-	-	-
		2015	**5**	**5**	**5**	**-**	**-**	**2**	**40%**
4	창동청소년 성문화센터	2013	5	5	5	0	0	0	0
		2014	5	5	5	0	0	3	60%
		2015	**5**	**5**	**5**	**0**	**0**	**1**	**20%**
5	드림청소년 성문화센터	`2013	5	5	5	0	0	1	20%
		2014	5	5	5	0	0	0	0
		2015	**5**	**5**	**5**	**0**	**0**	**4**	**80%**

○ 서울시는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6년도에 3%의 인건비를 인상했으며, 수익금에서 연봉제 직원 1인당 10만원 내 처우개선 수당을 편성·지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.

○ 또한 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성문화센터의 팀원 및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라(제15조제2항 관련 별표2)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전문성 저하로 인한 민간위탁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2]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- 팀원 및 전문 강사

1. 아동학, 청소년학, 여성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학,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2.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비고 : 지역의 사정으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전 문 위 원	: 김 태 한
입법조사관	: 정 찬 일